

20021. 9.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I.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1. 예산총액

(단위 : 천원)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 / 감	비 고
1,033,763,512	1,013,524,863	20,238,649	기정예산대비 2.0%증

2. 세 입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 △ 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합 계	1,033,763,512	100.0	1,013,524,863	100.0	20,238,649	2.0
국가부담수입	816,605,014	79.0	806,462,335	79.6	10,142,679	1.3
-지방재정교부금	693,750,388	67.1	686,459,284	67.8	7,291,104	1.1
-지방교육양여금	116,657,321	11.3	116,657,321	11.5	0	-
-국고지원금	6,197,305	0.6	3,345,730	0.3	2,851,575	85.2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	91,487,809	8.8	86,093,944	8.5	5,393,865	
-법정전입금	90,162,866	8.7	85,416,944	8.4	4,745,922	5.6
-비법정전입금	1,324,943	0.1	677,000	0.1	647,943	96.7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124,047,295	12.0	118,698,648	11.7	5,348,647	
-재산수입	2,867,072	0.3	2,366,122	0.2	500,950	21.2
-입학금및수업료	36,170,129	3.5	36,170,129	3.6	0	-
-사용료및수수료	217,749	-	217,749	-	0	-
-잡수입	9,053,176	0.9	4,205,479	0.4	4,847,697	115.3
-이월금	75,739,169	7.3	75,739,169	7.5	0	
-지방교육채	0	-	0	-	0	-
-지방교육채	0	-	0	-	0	-
주민(기관등) 부담수입	1,623,394	0.2	2,269,936	28.5	△646,542	△28.5
-주민(기관등)부담수입	262,000	-	262,000	0.0	0	0.0
-기타지원금	1,361,394	0.2	2,007,936	32.2	△ 646,542	△32.2

3. 세 출

(단위 : 천원, %)

관 별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 △ 감	
			금 액	비 율
합 계	1,033,763,512	1,013,524,863	20,238,649	2.0
유 치 원	5,667,869	4,320,745	1,347,124	31.2
초 등 학 교	146,673,526	135,148,031	11,525,495	8.5
중 학 교	128,137,432	123,023,394	5,114,038	4.2
고 등 학 교	106,347,790	97,294,605	9,053,185	9.3
특 수 학 교	12,121,150	11,163,717	957,433	8.6
기 타 학 교	78,347	74,792	3,555	4.7
평 생 교 육	1,982,144	1,572,549	409,595	26.0
급 여 관 리	520,345,194	520,344,954	240	-
복 지 · 후 생	58,350,359	58,350,359	0	-
교 육 위 원 회	366,621	366,621	0	-
선 거 관 리	155,696	155,696	0	-
교 육 청	11,813,607	12,313,174	△ 499,567	△ 4.1
지 역 교 육 청	5,082,590	5,039,224	43,366	0.9
교 육 지 원 기 관	4,675,142	4,225,107	450,035	10.7
지 방 채 상 관	15,426,000	15,426,000	0	-
제 지 출 금	0	0	0	-
예 비 비	16,540,045	24,705,895	△ 8,165,850	33.1

II.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02년도 기정예산 1조 135억 2,486만 3천원보다 2.0증가(202억 3,864만 9천원)한 1조 337억 6,351만 2천원임.

1. 세입예산의 재원별 부담으로

- 국가부담수입은 기정예산 8,064억 6,233만 5천원보다 1.3%증가(101억 4,267만 9천원)한 8,166억 501만 4천원이며
- 지방비부담은 기정예산 2,070억 6,252만 8천원보다 4.9%증가(100억 9,597만원)한 2,171억 5,849만 8천원임.

2. 자체세입예산은

-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 수입이 6.3%증가(53억 9,386만 5천원)한 914억 4,780만 9천원이고,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 수입은 4.5%증가(53억 4,864만 7천원)한 1,240억 4,729만 5천원으로 이는 잡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115.3%증가(48억 4,769만 7천원)한데 기인함.

3.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중 물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0.4%증가(4억 9,786만 5천원)한 1,254억 6,672만 9천원임.

4. 경상이전비는

기정예산보다 3.3%증가(88억 2,947만 5천원)한 2,754억 4,954만 3천원임.

5. 자본적 지출경비는

기정예산보다 10.6%증가(190억 7,691만 9천원)한 1,987억 8,298만 6천원임.

6.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33.1%감소(81억 6,585만원)한 165억 4,004만 5천원임.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제2회추경)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비교 (%)
계	1,033,763,512	1,013,524,863	20,238,649	2.0
인 건 비	406,792,513	406,792,273	0	-
물 건 비	125,466,729	124,968,864	497,865	0.4
경상이전비	275,449,543	266,620,068	8,829,475	3.3
자 본 지 출	198,782,986	179,706,067	19,076,919	10.6
예비비및기타	16,540,045	24,705,895	8,165,850	△33.1

III. 검토의견

1. 지방교육재정계획 추진

제1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01. 11. 5)에서 보고한 충청북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2001~2004)에 의거 금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업내역과 중기 지방교육재정계획의 수정 보완의 필요성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2. 지방교육재정운영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운영의 문제점은

- (1) 당초예산 편성시 순세계잉여금의 과소계상
- (2) 회계연도 중간에 다액의 국고지원사업 시달
- (3) 지역별, 사업별 부분투자
- (4) 부속시설사업 추진중에 기본시설의 증·개축, 대수선 사업채정
- (5) 선결문제 미해결사업의 투자 추진
- (6) 당초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사업비 반영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 및 통합발주와 연계시공 사유발생으로 사업의 지연 및 예산의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정한 세입재원 분석과 투자우선 순위 및 투자시기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회계연도 중간에 다액의 국고지원 사업시달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의 성립전 집행은 지양되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 적극 건의 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세입예산

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수입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은 2002년 2월말 출납 기간이 도래하면 징수액파악이 가능함에도 법정전입금 47억 4천만원을 2002년도 제1회추경(200. 5. 14)에 계상하지 않고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배경과 비법정전입금중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세입예산 2억 9천 9백만원 증액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나. 재산수입

- 대지료, 대가료 및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2002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당해연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전액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금회추경에 증액 요구한 5억 9백만원중 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로 인한 편입보상금 3억 1천 7백만원을 제외한 재산수입을 증액 계상요구한 것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다. 정기에금 이자·위약금·과년도 수입

정기에금 이자수입 45억원과 위약금 2천만원 증액계상과 과년도 수입 7백만원의 신규계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라. 잠수입

-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귀속 기타 5천 4백만원
- 교육과학연구원 이전 신축선금 반환 소송비용 1천 4백만원
- 2급관사 임차료 반환금 8천만원
- 지역교육청의 잠수입 1천 1백만원 계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세출예산

가. 성립전 예산집행

- 금회추경에 계상요구한 성립전 예산집행은 다음표와 같이 12건에 37억 6,405만 2천원으로서 그 내역은 연수 관련 5건, 판람 및 운영비 지원 3건, 기자재 및 교재 2건, 시설 및 설계비 관련 2건으로서 내용상 긴급한 사업은 아니라고 보며
- 지방재정법 제36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 사용할 수 있으며 ” 이는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지방의회의 예산사전승인제도의 예외적 규정이고 예산집행기관의 재량을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 비록 소요사업비 전액이 국가로부터 교부되었더라도 이 규정을 남용할 경우 지방의회의 예산심의를 통한 전제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우선 순위에 의한 예산투자를 어렵게 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 긴급하지 않은 사업예산을 의회의 승인 없이 선집행 차후의회의 추인을 받을 경우 주민들로부터 예산운용의 신뢰성을 상실하고 비판을 받게될 것이므로
- 향후 성립전 예산집행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대한 집행을 억제하고 재해구호 및 복구와 같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시간적으로 의회의 심의를 기다릴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성립전 집행예산계상 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금 액	비 고
합 계 12건	3,764,052	
1.시도교육감 국제교류협력	41,700	• 해외연수
2.금빛평생교육봉사단운영	100,000	• 피직자연수
3.월드컵행사 추진	114,015	• 비인기국가간경기관람입장권
4.밤하분산시범학교 운영	19,600	• 운영비지원
5.발명교육시범학교 운영	2,000	• 운영비지원
6.실업계고교 직업교육확충	2,593,774	• 장학금 575,712 • 기자재 2,018,062
7.제7차교육과정연수및홍보	44,900	• 연수경비
8.특수교육환경개선	545,000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시설비
9.학교폭력예방및근절을위한 특별교육연수	21,072	• 연수경비
10.성교육 교수·학습자료개발	4,500	• 교재개발비
11.실업계고교 교원사업제현장연수	93,645	• 연수경비
12.특별교부금 사업(일부성립전 집행)	183,846	• 설계비 (기숙사, 다목적교실, 노후교사개축, 특별교실증축)
비 고		• 연수경비 5건, 관람 및 운영비지원 3건, 기자재 및 교재2건, 시설 및 설계비 2건

나. 산출기초 미기재

- 집행부의 예산(안)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단위단가, 물량, 적용율등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일부 사업비의 경우 소요사업비 책정등 타당성을 검토하기가 어려우며
- 설계비와 시설부대비예산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시달한 예산편성기본지침서에 의거 사업금액에 따라 적용율이 다르므로, 반드시 이를 기재하여야 하나 집행부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금년도 당초 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 심의시에 시정토록 한바 있으나
- 금회 추경예산에 요구한 설계비와 시설부대비 예산의 사업별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다. 예산 투자시기 책정 부적절

- 지방교육행정의 (1) 효율적 추진 (2) 물가인상전 사업 완료 (3)사업의 품질제고를 위해서
 - 인건비
 - 관서운영비(일반운영비, 여비, 공공요금, 급량비, 임차료, 재료비, 인부임, 장비유지비)
 - 여비등 기타 물건비
 - 지방채상환이자와 학교회계전출금중 당해연도 완공이 불가능한 목적사업비를 제외한 기타 경상이전비(사학이전비 포함)와

- 자본지출경비중 설계비, 토지매입비, 자산취득비와 지방비 전액 단기투자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예산에 편성하거나 늦어도 추정재원이 많은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야 하나
- 금번 추경에 승인 요구한 사업예산중
 - 버스교체(7천만원)등 자산취득비 계상
 - 관사매입(1억6천만원)
 - 사업기간 부족이 예상되는 학교급식시설 사업 (7개교 608,250천원 전액 지방비 증액)
 - 영재교실운영(35,185천원)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설명이 요구됨.

라. 유치원 종일반 운영

- 2002년도 당초예산에 유치원 종일반 운영예산계상내역과 금번 추경예산 요구액은 다음표와 같으며 이와관련
 - 유치원 종일반 참여희망자 증가 현황
 - 보조교사 1인당 인건비 산출기준(1일단가 및 근무일수)
 - 청주지역은 당초예산에 원당 200만원을 운영비로 계상한바 금회추경의 산출기초와 통학버스 1대(5,300만원)의 용도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유치원 종일반 운영예산 계상현황

구 분	2002년 당초				제2회 추경 증액요구	
	운영비		보조교사		운영비	보조교사
	개소	금액	인원	금액		
계	50	62,000	45	299,745	21,000	77,973
청 주	12	24,000	12	79,932	11,000	40,843
충 주	6	6,000	6	39,966	3,000	11,139
세 천	7	7,000	2	13,322	5,000	18,565
청 원	3	3,000	3	26,644	1,000	3,713
보 은	2	2,000	2	19,983	-	-
옥 천	4	4,000	4	26,644	1,000	3,713
영 동	3	3,000	3	19,983		-
진 천	4	4,000	4	26,644		-
괴 산	3	3,000	3	19,983		-
음 성	4	4,000	4	26,644		-
단 양	2	2,000	2	13,322		-

마. 학생증식지원사업

- 2001년도 학생증식지원사업은 54억 8,400만원의 예산중 49억 9,000만원의 예산으로 9,577명에 대하여 증식지원을 한 바 있으나
- 2002년의 경우 당초지원예상인원 9,600명보다 약 22%의 인원(2,080)이 증가된 바 기정예산과 금회추경중액(236백만원)요구액을 합산한 51억 7천만원으로는 부족하지 않은지?
- 또한 금년 8월 수해, 지난 8월 31일의 루사(RUSA) 태풍으로 도내에도 엄청난 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한바 향후 증식지원 대상학생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의 설명이 필요함.

바. 사학지원비

- 의무교육제도하에서 사립초등학교 계단실 설치비 2억 3천 2백만원과 창고시설비 7천 9백만원을 지방비 자체사업으로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은 특혜는 아닌지
- 사립중학교 개축비 11억원중 설계비등 일부를 성립전 집행한바 이 사업은 사업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금년도에 착공 하더라도 사업완공이 어려우므로 차라리 2003년도 본예산에 계상 해빙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사.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 언론보도에 의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각 시도 교육청과 연계하여 몇년간 추진해온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완전히 실패 무용지물이 되고 예산만 낭비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 금회 추경예산에 국고지원분 8억 8천만원만 감액하고 지방비 자체예산 25억 720만원을 감액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없는지
- 또한 이 사업의 추진경과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그간 투자한 재원별 사업비 총액과 사업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아. 교육환경개선 사업

-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1회 및 제2회 추경예산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의하면 다음표와 같이 금년도 교육환경개선 총사업비는 14억 8,066만 8천원의 차이(착오)가 발견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단위:천원)

국 교 (A)	자 체			합 계 (A+B)	2회추경 설명자료 (C)	차 액
	1회추경	2회추경	소 계 (B)			
30,517,000	14,034,075	10,339,292	24,373,367	54,890,467	56,371,035	1,480,668

-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지방비 부담비율과 금년도에 지시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지방비 부담액은 전액 확보 하였는지
- 또한 1회추경에 예비비를 당초예산 예비비 105억원보다 141억원을 증액하면서 추경재원이 풍부하지 않고, 금년도 사업기간이 얼마남지 않는 금회추경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103억원을 계상함으로써 교사개축, 화장실개선, 편의실 확충등과 같이 다액이 투자되고 단기간내 완공이 곤란한 사업은 사업이월이 불가피한데 이와 같이 예산을 투자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이 요구됨.

자. 단설유치원 통학버스 취득

- 단설유치원 설립사업은 2003. 3월1일 개원 목표로 금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계상요구한바 금회추경에 승인을 받아도 설계기간,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기간등을 제외하면 공사기간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 개원까지 아직도 5개월여가 남았는데 금회추경에 통학버스 예산(5천 3백만원)을 계상한바 개원전에 버스를 취득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금년도에 지출원인행위만 한 후에 사고이월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운전요원확보와 병행하여 2003년도 본예산에 계상 집행하여도 가능하다고 사료되는바 타당한 설명이 필요함.

- 단설유치원 설립은 청주지역 6학급 198명의 규모로
설립하는 것으로 유아교육 기회확대와 공교육화 기반
조성은 바람직하나
 - 기존의 사설유치원 운영과의 마찰
타시시군지역의 유아교육 균형발전차원에서 향후
확대지원 대책등이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차. 기 타

다음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1) 사립고등학교 공동 합숙소신설(사항설명서 123쪽)
- (2) 학교외부환경개선사업(127쪽)
- (3) 구내매점철거(91쪽)
- (4) 지방공무원 장기국외훈련(99쪽)
- (5)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109쪽)
- (6)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117쪽)
- (7) 디지털자료실 운영(133쪽)
- (8) 영재교실운영(133~136쪽)
- (9) 교육여건개선사업추진
- (10) 8. 31일 발생한 태풍루사(RUSA)로 인한 교육시설
피해(e)